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에 대한 의견

날짜 : 2011년 9월 16(금)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변춘희(010-7744-4853), 배경내(017-214-3550)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아래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 발표와 제정 추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본부는 지난 8월초 조례제정 청구인 97,702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성사시키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뜻을 모으고 서울시민들이 지지를 보여준 주민발의안이 그 의의를 살려 서울시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 자체 안을 발표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대해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관심과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깊은 고민과 연구가 반영된 진전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조 학습권 등이 그런 조항입니다. 서울본부는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내용상 몇 가

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입법예고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분량 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적겠습니다.

2-1. 3조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제한은 다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나 구체적이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인권의 원칙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면 학생의 인권 기준을 선포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존중·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조의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2-2. 5조에서 2안, 학생의 책무 조항에서 학생이 학교의 생활교육방침과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한 것 역시 무조건적으로 규칙 준수를 요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방침과 규율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학교의 교육방침과 규율이 많은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교육방침과 규율이 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라는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듯한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2안 모두에 포함된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학생에게만 그러한 책무를 부과할까요?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의 특성상 '법령에 따른 책임'을 적용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 책임과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한 지도'라는 인권조례의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지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책무에 관한 5조의 내용은 삭제하되, 교육감 등 다른 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한 4조에 합쳐 균형 있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3. 7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 예시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 및 재생산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 한 다양한 폭력 및 혐오, 차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학생들의 가출, 짝은 결석, 자퇴, 우울,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등의 실태는 여러 국내외 논문들을 통해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서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 지

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 사유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과 광주 의 입법예고 안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도 더 후퇴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21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에서도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시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4. 1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그 내용이 충분치 않으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큼니다. 1안과 같이 두발복장의 자유를 학생이 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두발복장규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는 2000년, 처음으로 두발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을 무렵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지침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학생회 자치규제를 명시한 2안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발복장의 자유는 학생 일반이 아닌 '개인'에게 속하는 개성실현권으로, 이를 제한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이 학칙 또는 학생회 규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인권적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의적 두발복장규제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큼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역시 두발복장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적어도 두발의 길이 규제만이라도 분명하게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유를 그나마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14조의 내용은 이러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2-5. 셋째, 15조 사생활의 자유에서 4항,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와 관련된 조항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4항의 1안에서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교육활동과 수업권 보장이라는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순 없고 수업시간 중 사용에 관해서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게 한 주민발의안이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도 불합리한 안입니다. 이는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전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조차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를 허용하고, 그 사용은 수업시간과 같은 경우

에만 필요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6. 19조 4항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도 1안은 자의적 제한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1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교육상 목적을 위해"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허가제 운영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위법으로서 아동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UN아동권리협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제한이 가능한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2-7. 21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조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규정의 제·개정과정에서 '의견제출권'을 보장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제출권은 대단히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을 정당하게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학교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제출권과 함께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학생대표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의견 제출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학생의 의견에 적당한 비중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삽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서는 '학칙 등 학교규정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생대표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밝을 것'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2-8. 학생자치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더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35조 학생자치의회 조항에 따르면 학생자치의회는 초중고에서 각 1인씩, 학생회 중에서 뽑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1200여명의 학생들이 학생자치의회를 구성하며, 재적의 과반인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야 학생자치의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간, 재정 등 여러 여건상 이런 조건으로는 학생자치의회가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연 1회 정기회의 외에는 제대로 회의를 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에서 학생자치의회가 실질적인 참여 기구가 아니라 소수 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는 들러리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느낍니다. 학생자치의회가 실질적인 참여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과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거나, 의원 수 조정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학생참여위원회의 형식으로 학생자치의회를 대신할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학생자치의회 의원들을 학생회 임원들 중에서 뽑다보면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과대대표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의원 수를 배당하여 **다양한 소수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서울본부는 조속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주민발의 성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민들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지지와 열망이 물거품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뜻을 반영하여 좀 더 학생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수도 서울이 갖는 위치의 막중함을 고려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교육청안이 여러 기대와 염려를 뒤로 하고 부족한 조례안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주민발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더욱 성숙해진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그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고, 서울 교육이 인권이 꽃피는 학교, 학교 구성원들 상호간의 존중이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약속드립니다.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